



의안번호

제122호

##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8. 11. 19.

#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2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1. 1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【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】

○ 설립 일 - 1998. 12. 28.
○ 일반현황 - 임원현황 : 이사 11명, 감사 2명 - 기본재산 : 3,974,000천원
○ 설립목적 - 인재육성을 위한 초·중·고·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-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지원사업

### □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: 540,000천원

-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·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

### □ 출연계획 (최근 5년 출연 현황)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합계	530,000	530,000	530,000	540,000	540,000
출연금 (시비100%)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
출연금 (협력사업비)	130,000	130,000	130,000	140,000	140,000

□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
- 「금고업무취급 약정서」

**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공기업정책과), 02-2100-3550

**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**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**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**

[시행 2010.9.30.] [조례 제677호, 2010.9.30., 전부개정]

평생교육과, 041-746-5761

**제7조(출연금)**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 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6.28.] [법률 제15528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

금고업무취급 약정서



**금고업무취급 약정서**

논 산 시

농협은행(주) 논산시지부



# 금고업무취급 약정서

<논산시 금고>

논산시 금고업무취급에 관하여 논산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농협은행 주식회사 논산시지부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금고업무) “갑”은 논산시 소관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(이하 “금고업무”라 한다)를 “을”에게 취급하게 한다.

제2조(취급업무)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각종 세입금의 수납
2. 각종 세출금의 지급
3.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
4.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5.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
6. 그 밖의 “갑”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제3조(법령, 조례, 규칙 준수) “을”은 이 약정에서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, 조례,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배상책임) “을”은 “갑”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“갑”에게

승낙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에도 제16조의 예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금고 검사) “갑”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“을”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.

제19조(관련서류 보관) “을”은 금고업무 취급시 발생한 관련서류는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(10년 이상)하여야 한다.

제20조(약정내용의 변경)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21조(출연 등) 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안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3. 31.까지(4년간)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, 납입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『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서』 제23조(손해배상) 규정에 따른다.

② “을”이 금고지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는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.

제22조(계약 조문 해석) 이 약정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

제23조(유효기간)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약정기간 만료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는 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비밀유지) “을”은 “갑”과의 금고업무 취급시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기타) 금고업무 수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“을”의 산하 지점과 지역조합에서도 금고 업무를 대행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환원사업에 최선을 다한다.

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,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9월 일

[갑] 논 산 시 장 황명선



[을] 농협은행(주) 논산시지부장 권용근



▶ 평가자료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



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계획

논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비 출연



▣ 연도별 출연계획

[단위 : 백만원]

연도별	출연금액	비고
합계	560	
2018년	140	
2019년	140	
2020년	140	
2021년	140	

2017.9.27.

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권용근 (인) (인)  
논산시 중앙로 477(반월동)

논산시 금고지원을 위한 제안서

